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278호 2021. 11. 10.(수)

【조 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39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39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1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39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39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4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39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4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395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51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행정이 전문화·다양화되면서 행정권한이 확대되고 소극적 행정처리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구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적·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할 옴부즈만을 설치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옴부즈만의 기능 및 구성 등(제3조 ~ 제16조)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제17조 ~ 제33조) ○ 사무기구 및 운영지원(제34조, 제3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390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

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옴부즈만”이란 구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기능 및 구성 등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5.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구청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

장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새로운 옴부즈만을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임명하며,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

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음부즈만은 재적위원의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권) 음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구 본청 및 소속기관
2. 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음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음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음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9조(겸직금지) 음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참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구의회 의원
3.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구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옴부즈만 위촉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명망과 학식 등을 고려하여 구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는 옴부즈만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제14조(전문가 자문)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가 자문에 응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업무처리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

제17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옴부즈만은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소속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옴부즈만 및 제34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이송)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관계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소속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감사가 진행중이거나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서 정한 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8.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22조(합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조정) ① 옴부즈만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고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24조(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재심의)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30조(감사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 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옴부즈만의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및 운영지원

제34조(사무기구)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1. 제안이유 ○ 각 동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 등(제1조 ~ 제5조)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제6조 ~ 제14조) - 위원의 자격, 선정, 위원장 및 위원 임기, 위원의 의무,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 ○ 주민자치회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제15조 ~ 제20조) - 회의, 주민총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 ○ 자치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제21조 ~ 제23조) ○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24조 ~ 제26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규정(제27조 ~ 제28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391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활동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

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학습·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6. “자원활동가”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 주민자치회별 자율적·민주적 운영
4. 정치적 이용·활용 목적의 배제
5. 사익추구 활동 금지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이나 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4. 기타업무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이 있는 업무 수행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고 한다) 1명과 주민자치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고 한다)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제4호의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직능단체 :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법인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으며,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 추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가 전체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전체위원의 80퍼센트 이내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20 퍼센트 이내

-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능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 ③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④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위원추첨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명부 접수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되어 충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 ⑦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

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첨위원회는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위원 2명 이내

2. 해당 동의 학교·기관·단체의 추천위원 2명 이내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⑥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해산하며,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첨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며, 선거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종료일과 같이한다.
- ⑥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임기 만
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 ⑦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께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
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보궐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임
기로 하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 ⑧ 제6항에 따라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선출방법에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은 추천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 보수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
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제6조제2항의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경우
5. 제2항에 따라 해당 주민자치회로부터 해촉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만19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 해촉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서와 의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지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 근무자 및 자원활동가를 둘 수 있다.
- ④ 자치회장은 사무국장과 사무국 근무자, 자원활동가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사무국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해 2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

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된 결과보고서는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구와 동 홈페이지나 동 행정게시판에 공고하여 지역주민에게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사항에 대한 발언권은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속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분과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의 회의(주민총회를 포함한다)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재난·재해상황 등 필요 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회의 참석자는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⑦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회의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자치계획

- 제21조(자치계획안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자치계획안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 제22조(자치계획의 내용 등) ① 자치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결정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3조(자치계획의 지원) 구청장은 해당동 주민들이 공론화한 자치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4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각 동 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 유공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주민자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9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와 제16조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 만료 후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④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종전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재산 및 기능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안이유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원칙, 설치 및 기능 등 규정(제1조 ~ 제5조)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기준 규정(제6조 ~ 제7조) ○ 자원활동가, 강사 운영 및 수당 기준 규정(제8조 ~ 제9조) ○ 시설 등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기준 규정(제10조 ~ 제11조) ○ 주민참여 방안 마련 및 센터 운영 보고 사항 규정(제12조 ~ 제13조) ○ 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제14조) ○ 지도감독사항 규정(제1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392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학습·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2. “단체”란 동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자원활동가”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문화·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자율적 참여 보장 및 주민자치활동의 지원
3. 공공성 강화 및 동별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학습·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공동체활성화,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작은 도서관, 북카페,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소속공무원, 자원활동가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 주민자치회 위원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체육대회등 지역문화행사

4. 박람회 참여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 등 선진지 견학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연구개발·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하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활동가)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활동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또는 프로그램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 ③ 구청장이 정하는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 2로 정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달 20일 이내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동장은 주민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

는 자원활동가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른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 위탁 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재정 지원 분야 등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보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문서로 주민자치회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재산 및 기능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

(제10조제3항 관련)

구분 \ 내용		기준	사용료 등	비고
시설 사용료	다목적홀, 회의실 등 (부대시설 포함)	1시간	냉 · 난방사용시 :20,000원 미사용시 :10,000원	기준시간외 초과시간은 30분단위로 계산
프로그램 수강료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 등 프로그램	1개월/주1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재료비별도
		1개월/주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0,000원 이하	
		1개월/주3시간 초과	40,000원 이하	
	체력단련(헬스)	1개월	22,000원 이하	

단,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및 요율

(제10조제5항 관련)

구분	감면비율	감면 대상	비고
시설물 사용료	전액 면제	-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등록 장애인 -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 공연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 등록장애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수강료 감면은 연수구 주민에 한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기본원칙 및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제3조, 제4조) ○ 지원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5조, 제6조) ○ 위원회 설치, 운영(제7조) ○ 공동무역제품 구매촉진 등(제8조) ○ 공정무역마을 운동(제9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393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가.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를 확대한 지역

나. 학교, 회사, 상점, 각종 회의, 행사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확대한 지역

다. 공정무역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지역

라.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무역마을 만들기에 앞장 서는 지역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4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의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공정무역 홍보 및 활성화 사업 활동참여자 지원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제8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공정무역마을 운동) 구청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공정무역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신설(안 제5조) -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6조) -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394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u><신설></u>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u>
제6조(구성) ① (생략)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③ ~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제2조) ○ 소송비용 지원 (제3조) ○ 소송비용 환수 (제4조) ○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제7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395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
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선임비용), 인
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

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구분	소가별 지급기준	착수금	승소 사례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없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	800,000원	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용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000,000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500,000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500,000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000,000원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00,000원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0,000원	
	5억원 이상	4,500,000원	
상 소 심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환송사건	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		
기 타 소송비용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그 밖의 비용	실비	
형사사건	1. 수사단계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인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없음
	2. 형사재판	5,000,000원 이내	
헌법재판소 관 할	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 하거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000,000원 5,000,000원	없음

- ※ 1.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종결)된 후에 지급한다.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함)
 3. 착수금 및 사례금을 지급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 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해당서류(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납부명령서 등)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 폰) (자택) (사무실)			
	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분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분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서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민사·행정 소송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형사소송	검 사		-	
		피고인		변 호 인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